# 社 說

## 노사간의 '신뢰'라는 배를 탈때

### —세계노동절을 통해 본 학교노조

시대는 바야흐로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그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이 강렬하여, 곳곳으로 파급되어 가고 있다. 지난 1일 연세대학교에서 4만여명이 모여 거행되었던 노동절 집회는 실로 감회어린 행사였다. 지난 35년 동안 자기들의 기쁨조차 가질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이제 그들의 날을 기념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이 뜻 깊은 노동자 날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학교 구성원의 모두가 바람직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학교당국과 노조의 화상을 점검할 때이다. 우리 경희는 가족 정신을 매우 중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과 학교당국은 이 가족정신에 충실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볼 때이다.

우선 직원들의 명칭부터 비민주적이요 비가족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립학교법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지만 노동직종을 세분하여 위화감을 주는 관리직, 용원직, 환경직보다는 기능적으로 명하여 서로 자부심을 갖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시직의 경우도 그 직종상의 문제와 학교 예산 절감이라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은 확고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 임금수준도 노력하는만큼 확고히 보장이 되어 정규직과 같은 수준에까지 올려야 한다.

그동안 학교와 노조는 노사협상을 통하여 이해와 실질적인 상호이익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상채널을 확대, 개편해 나가야 한다. 가령 지난번 근무형태 변경에서 보여진 노조의 편견과 학교측의 무리한 요구는, 잘잘못을 막론하고 되풀이 되서는 안되겠다.

지금 단체협약이 진행중이나 서로의 기존입장만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당국은 총학생회와 인권비 징감 등을 약속하는등 학교예산축소에 기본적인 시각을 함께한 상태라 임금억제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반면 기존의 조합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재직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 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임금지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은 상호간의 불신과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계된 문제들을 솔직히 개진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여 학교당국과 노조의 발전을 꾀해야 할 때다.

이제 노사간의 추세는 단순히 임금의 몇퍼센트 인상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직장의 안정을 확보하며 문화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되가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 급진전되어가는 산업정보사회에서 노조원 개개인의 기능화가 요구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요구에 맞추지 못한 노조원은 도태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노조원의 기술훈련을 통한 전문화와 사무화가 앞으로의과제이다.

법적으로는 어떠하든 학교당국과 노조가 호혜적이고 가족적인 차원에서 노조원들의 주장과 고충을 학교당국의 어려운 입장을 헤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희는 민주화를 교시로 삼고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경희가족정신을 떠올려야 할 때이다. 아울러 민주화와 물결에 경희가족 모두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보장과 노사간의 신뢰라는 이름의 배를 밭 짓을 주장한다.

## 대학입시도 하나의 교육임을 보여줄때

### —본교 본고사 미실시 결정을 보며

올 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등 새 입시제도가 도입된 첫 해이다. 그러나 교육평가원의 입시부정사건으로 출제경향, 내신등급 조정 등 여러 문제들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94년 입시를 준비하고 시행할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은 입시부정에 휘말려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별 본고사 실시여부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

본교는 지난 20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본고사 실시방침의 철회로 이에 따른 새로운 입시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학교당국은 또한번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차선발의 비율이나 계열의 특성에 맞는 가중치적용등의 여러 사안 등을 올 해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비단 우리학교 뿐 아니라 타대학들도 마찬가지 사정일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수학능력 1차평가를 4개월 앞둔 시간의 촉박함과 처음으로 시행하는 입시제도라는 어려움이 학교나름대로의 입시방안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입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희학원의 학풍을 이을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입시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입시방안은 '입시위원회'뿐 만 아니라 전 경희인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입시부정에 의해 크게 좌절하고 분노한 수험생들의 학부모들은 5월이 오도록 구체화되지 않은 94학년도 입시방안에 대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본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나 학교당국의 고민만으로 그 방안이 마련되기는 힘들다.

대학입시가 부정의 표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대학만이라도 대학입시도 하나의 교육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지하고 철저한 자세가 필요할 때라 하겠다.

# 법률가, 기본적 소양교육 강화 필요

## '법의 날'맞은 변호사의 위상정립을 위해

사론

### 글머리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A good lawer is a bad neighbor)"인가?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법조사회에도 몰아다쳐, 급기야 비리 변호사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소송은 당사자를 여위게 하고, 변호사를 살찌게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최근 지방의 한 젊은 변호사는 '변호사여, 부끄러워 하자'는 반성의 글을 통하여, 변호사들의 맹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법의 날(5월1일)'을 맞으며, 국민은 참담한 심정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하며 어떤 방향으로 바로 잡아 나갈 것인가? 여기서는 제아법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개선책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 문제의 제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그 사명으로 한다(변호사법 제1조). 그동안 변호사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그간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변호사는 '정의의 사원에서 일하는 성전자(聖戰者)'에서부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장사꾼'에 이르기까지 그 평가와 기대가 엇갈리지만, 변호사가 민주사회의 정의의 보루로서의 객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는 인간관계의 오류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송절차에 의한 검증으로 오류를 배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따라서 윤리와 법률이 유일한 무기이므로, 판결·학설 등 많은 선례의 조사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우리의 풍토는 변호사의 능력이 상당부분 법이론 외적요소에 좌우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른바 '법정의 변론이나 '진판에우' 또는 '판검사와의 교제·접대' 등에 더 신경을 쓰고 여기서 발휘되는 재주가 그 변호사의 능력을 결정하는 해묵된 풍토로 전락한 것이다. 어처하여 "민주주의의 교육의 요소와 충돌 없이 공존하고, 앞으로도 영구히 조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귀축적 요소"라는 평가를 받아온 법률전문직이 브로커의 하수인 꼴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따라서 변호사윤리의 확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과감한 자체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이제 직업윤리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 성 태

〈법대교수·법학〉

### 변호사비리의 실상과 대책

**1. 사건수임과정**

1)사건유치과정의 비리:변호사가 경찰서 병원 등과 연계하여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 수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예가 많다. 이경우 소개비가 건네지며, 그 비율이 점차 올라 현재 2~3할선에 이른다. 최근 판사직을 사임하고 개업한 30대 초반의 변호사는 개업 두달만에 무려 300건의 사건을 수임하는 놀하운(?) 능력을 보이다가 구속된 바 있다. 이들 일부 탈선변호사들 때문에 할간에는 변호사 전체가 '7할짜리 변호사'로 놀림을 받고 있다. 소개비 부담은 의뢰인에게 전가되어 턱없이 비싼 변호사비용을 물게 되고, 변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다.

이 비리는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자존심이 결핍 든 체이므로, 변호사 스스로의 자숙이 필요하며, 변호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적발시 변호사와 사무장을 형사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광고의 문제가있다. 현행 변호사법과 윤리규정은 변호사가 자기의 전력 기타 선전적 사항을 명함, 간판에 기재하거나 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의 품위유지를 위한 금지규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처지에서 보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공식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변호사시장은 있으되, 시장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시장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광고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불공정한 선임계약: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서의 조항들이 지나치게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을 잃고 있다. 다른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꼬치꼬치 따지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야 할 것이다.

3)[illegible] 보수:변호사란 '당신[illegible] 당신의 적으로부터 [illegible]를 스스로 차지해 버리는 학식있는 신사'라는 독설이 우리 형편에서 매우 실감있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변호사는 무보수 봉사직업이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직업적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석금을 변호사가 취득하는 등 그릇된 관행도 당장 고쳐야 한다. 따라서 현행 종가제를 보완하여 선임료를 현실화하고, 위반시 강력한 징계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2. 사건처리과정**

1)법정외변론:현행 재판 제도와도 일관된 문제이나 사건의 변론을 법정보다 관행실에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조리의 고리가 되고 있다. 또한 판·검사의 접대·교제 문제도 부조리의 하나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법관이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판사를 법논리로 설득할 생각은 않고, 지연·학연 또는 향응으로 압박하거나 매달리려는 자세는 크게 반성할 일이므로 이 관행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변호사회의 자발적 결의를 통해 판사와의 개별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2)불성실한 사건처리:일부 함량미달 변호사의 사건처리 미숙 및 대량수임변호사의 부실, 소홀한 사건처리 자세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에 대한 배임행위나 마찬가지다. 최근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보상, 수임에 반환 청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며, 변호사가 패소하는 예가 빈발함은 부끄러운 일이다. 「단 5분 변론하고 남이 평생 벌어야 모을 돈을 챙긴다」는 원성에 변호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의 아닌 소송에 휘말린 국민의 심정을 살펴, 「모든 사건은 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변호사는 다져야 한다.

4)소위 「전관예우」의 폐단:갓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검사가 맡은 사건이라고 해서 법원·검찰이 특별히 잘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형평을 생명으로 하는 법조직무의 성질상 있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법관·검사의 반성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위직 법관·검사가 금방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맡는 것은 법조윤리나 사법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법관·검사를 유능하고 고결있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의 제도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법조사회의 선비정신 구현을 위한 전통을 확립할 필요성이 크며, 예컨데 이들이 일정기간 지방적으로 사건수임을 자제하고 국선변호에 치중하거나 이들의 경험을 법학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연결장치 등도 생각해 볼 만하다.

### 바람직한 변호사상의 재정립을 위하여

변호의 생명은 절차와 논리이다. 따라서 변호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해서도 직무의 모든 측면을 국민에게 떳떳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봉사자로서의 과감한 자세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변협의 당직 변호사제는 바람직하며 기대가 크다. 변호사직은 결코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특히 사법연수원출신 일부 젊은 변호사들이 외외로 논리문제에 무감각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 쥐꼬리만한 법률지식으로 일신의 영달에만 연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직업으로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한편, 법조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법학도를 양성하는 법과대학도 책임의 일단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가의 사회적 사명」에 관한 기본적 소양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법조윤리교육에 비중을 높이는 등 사법연구회 교육과정도 개편되어야 한다. 더나아가 변호사의 직역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변호사의 직업윤리문제를 최근의 사회정화의 차원에서만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힘없는 젊은 변호사 두세명을 제물로 삼고 정치적으로 덮어가는 식이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변호사의 직업윤리확립은 그 성격상 법조논리문제의 일부이므로 국민의 날카로운 관심과 법원·검찰 등 법법조적 협조가 요망된다. 본격적 민주·법치주의로 이행하는 새로운 변혁기를 맞아 재야법조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는 필수적이며, 개혁의 법리적 후원과 비판 등 재야법조가 할 일이 태산같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엄려스러운 일이다. 변호사는 이제 「좋은 법률가로,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국민의 날카로운 관심과 범법적 협조 요망
## 좋은 법률가로,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남아야

(고) (황) (만)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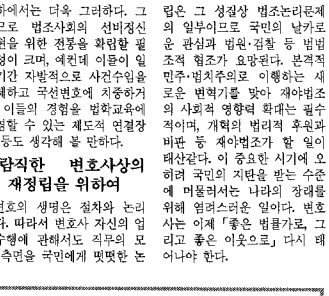

야 육룡 좀 뵈주라. 공·해 조무리기로는 부족원들이 성이 않찬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 삼성

삼성이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SAMSUNG

5
제2창업5주년

1938년 창업 이후, 끝없는 도전과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기업, 세계기업으로 성장해온 삼성---

삼성이 제2창업 5주년을 맞아 새로워진 얼굴과
새로운 각오로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한
힘찬 웅비를 시작합니다.

21세기를 불과 7년 앞둔 지금,
삼성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21세기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영이념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삼성인의 정신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에 도전하겠습니다.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SAMSUNG 삼성